



제 2019-79호
2019년4월26일(금)

여수시보

시정지표

- | | |
|---------|---------|
| 1. 시민공감 | 1. 감동시정 |
| 1. 균형있는 | 1. 상생경제 |
| 1. 사람중심 | 1. 나눔복지 |
| 1. 품격있는 | 1. 문화관광 |
| 1. 살기좋은 | 1. 정주환경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9-1108호 「여수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3
- 여수시 공고 제2019-1109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기 타】

- 여수시 규칙 제2019-706호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3
- 여수시 규칙 제2019-707호 여수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 /51

회								
관								

공 고

「여수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 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여수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등으로 인용 조문 및 내용이 맞지 않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지방세기본법」 제76조 ~ 제86조(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무조사 관련 조항)의 일부 신설·개정(2018. 12. 24.)됨에 따라 불합리한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용어정의, 세무조사 기본 원칙(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
- 대상자 선정 및 성실신고 존중(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일반·특별·부분 세무조사 대상자(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안 제14조)
- 중복조사 금지, 조사방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조사계획 수립, 조사지휘 및 종결 등(안 제30조부터 안 제37조까지)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자료 관리 등(안 제38조부터 안 제41조까지)

3.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4. 「여수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4. 26. ~ 2019. 5. 16. (20일간)

6. 의견제출

「여수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Mail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세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세정과
- E-Mail : yoohc@korea.kr
- 전 화 : 061-659-3527
- F A X : 061-659-581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여수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여수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됨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시장은 납세지가 여수시인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경우
2. 법인의 사업장이 2개 이상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3. 직전 세무조사 기간 이후 10억 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거나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
4.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5.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

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시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 종합관리 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1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관할이 전라남도로 이전되었으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시장은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선정일 기준 5년 이내에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
 4. 선정일 기준 5년 이내에 3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5. 선정일 기준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한 경우
-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 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3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발된 법인
3.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선발된 법인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5.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법인
6.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
7.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 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5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은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 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며,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조사 : 사무소 등에 출장하여 납세자가 비치, 기록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조사 :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조사
3. 부분조사 :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를 조사
4. 제2호 또는 제3호로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

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의 연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기간)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30조(조사계획수립) 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조사기간 및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진행 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

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보고하고 전라남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도개선 요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 사 공 무 원 행 동 수 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할 때 무리하게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착수 전, 조사 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다.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 착수 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라.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 마.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V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아.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 종결 즉시 종별복명을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조사적출내용 등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 마.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기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정히 영치합니다.

영 치 사 유						
영 치 기 간						
영치 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 회 인 등	소속			성명		
서명날인 거부 부기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영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 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 고

예 치 증

소재지(사업장) :

법인명(상 호) :

대표자(성 명) : (당 세)

위 업체에 대한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당 관서에서 정히 예치합니다.

20 . .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예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 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 고

공 고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개정·시행(2019. 7. 1.)으로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로 개정됨에 따라 시각장애 등급 4급의 자동차세 감면 기준을 현행 수준의 세재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2019. 7. 1.)으로 ‘장애등급제’를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종전의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지속 유지
 -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인용 조문 ‘제8조제4항’에서 ‘제8조제5항’으로 변경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인용 조문 ‘제38조제4항제2호’를 ‘제38조제4항제1호’로 변경

3.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4.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4. 26. ~ 2019. 5. 16. (20일간)

6. 의견제출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Mail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세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세정과
- E-Mail : yoohc@korea.kr
- 전 화 : 061-659-3527
- F A X : 061-659-581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 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가족” 은 「주민등록법」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

한다. 다만,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
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
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확인 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
2. 장애인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
3. 장애인의 직계비속(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4. 장애인의 형제자매
5.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
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
를 다시 취득하는 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 받은 기
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2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을 “제3항” 으로,
“대체취득하는” 을 “대체취득 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8조제4항” 을 “제8조제5항” 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 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p>

② 장애인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 받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 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가족”은 「주민등록법」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확인 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
2. 장애인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
3. 장애인의 직계비속(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4. 장애인의 형제자매
5.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 장애인 대체취득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

<p>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 2.(생략)</p> <p>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p>	<p><u>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 받은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u>]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p> <p>④ 제3항----- ----- -----대체취득 하는----- -----.</p> <p>1. 2.(현행과 같음)</p> <p>⑤ ----- ----- -----제8조제5항----- ----- ----- -----.</p> <p>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 ----- -----.</p>

2019년 제5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26일

여수시장 권오봉 인 

여수시 규칙 제706호

붙임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 시행에 관하여”를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중전의 제2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을 “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조례 제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법 제51조의2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탁자의 선정) 제3조에 따른 수탁자는 상위 법령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탁계약) ① 어린이집과 센터의 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날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육교직원의 임용) ①시장은 보육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육교사는 임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임용하고, 보육교사 외의 직원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용한다.

③ 임용위원회는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관계공무원 등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육교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보육교직원의 전보)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교직원을 재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을 재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사용·수익허가기간과 임차기간 동안에만 그러하다.

1. 기부채납된 어린이집
2. 장기 임차를 통해 시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
3. 도서지역(삼산면, 남면, 화정면)어린이집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여수시립 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나진어린이집	여수시 화양면 나진길 16-26
남면어린이집	여수시 남면 금오로 860
묘도어린이집	여수시 묘도1길 64 (묘도동)
미평어린이집	여수시 좌수영로 369-3 (미평동)
봉계어린이집	여수시 좌수영로 682-27, 101동 105호 (봉계동, 로얄골드빌)
삼산어린이집	여수시 삼산면 덕흥1길 29
수정어린이집	여수시 수정2길 11 (수정동)
쌍봉어린이집	여수시 안산1길 181 (안산동)
안산어린이집	여수시 장성3길 30 (안산동)
여서어린이집	여수시 대치1길 26-3(여서동)
여천어린이집	여수시 무선1길 8 (선원동)
연등어린이집	여수시 연등6길 54 (연등동)
응천어린이집	여수시 응천중앙로 54 (응천동)
죽림1단지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97-9
죽림2단지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38
중홍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죽림3길 10
청솔어린이집	여수시 돌산읍 강남1길 50
화정어린이집	여수시 화정면 신흥길 32-11

여주시립 ____어린이집 위탁계약서

여주시립 ____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____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6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시설) ① 위탁자는 다음 시설(이하 “위탁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1. 명 칭 : 여주시립 ____어린이집
2. 소재지 : 여주시 _____
3. 규모 : 지상 ____층 (대지 ____㎡, 연면적 ____㎡)
4. 보육정원 : ____명

② 놀이터 등 제1항에 표시되지 않은 시설 및 물품은 별도의 비품관리대장에 명시하여 위탁한다.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__ . __ . __ . ~ 20__ . __ . __ . (5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임차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로 재위탁 심사한다.

제4조(운영방법) ① 수탁자는「사회복지사업법」,「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 지침(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탁자의 행정 지시·감독 하에 위탁시설을 운영한다.

② 수탁자는「영유아보육법」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따라 우선 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① 수탁자는 성실한 시설유지관리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세입예산서상의 예산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②「영유아보육법」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따라 어린이집 재산상의 피해, 영유아·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위탁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험증권 사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이행보증기간은 위·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탁조건) ① 시설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은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으로 이행하되 보육교직원 임면권 및 전보권은 “위탁자”가 갖는다.

② 어린이집 운영 재원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한다.

③ 보육교사를 임용할 경우 “위탁자”가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한다. 다만, 도서지역(삼산면, 남면, 화정면)은 “수탁자”가 공개모집하고 “위탁자”에게 추천한다.

④ “수탁자”는 그 밖의 직원 채용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는 그 임용을 위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입소아동을 보육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를 준수하고 “위탁자”의 행정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정된 예산을 어린이집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정된 결산보고서를 어린이집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장비의 관리 책임)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와 수선을 위한 일체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손괴에 대하여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사용물품의 훼손·망실 등 제반손실에 대해서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물 등의 구조변경 등 원형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수탁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취득한 물품 및 재산은 위탁자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⑥ 천재지변 등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이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보수할 수 있다.

제9조(구조물의 변경 및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수탁자는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부대시설을 갖추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조물의 변경 및 부대시설의 설치 승인 시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모든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대시설에 대하여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기타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사고 및 배상책임) ①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피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수탁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상해보험 등 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모든 사고로 인한 시설물이나 대인사고 피해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 8에 해당하는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따라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보육교직원의 신분유지) 위탁기간 만료 시 “수탁자”를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12조(금지행위)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시설의 목적 이외의 사용

2. 위탁시설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대여행위
3. 위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자가 위탁시설에 설치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보육사업 지침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

제13조(지도감독) “위탁자”는 수시로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전반에 걸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고보고) ①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수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등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탁자”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포기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및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9조(위탁의 취소)에 해당될 경우
3. “수탁자”가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의 목적 및 수탁 응모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달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상호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는 위탁 당시 “위탁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을 이유로 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및 시설투자 비용, 기부채납된 재산권, 기부채납으로 발생한 운영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 취소 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수탁희망 신청사항 이행) ① 수탁자는 위탁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일체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운영 시 연간운영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권 부여) “위탁자”는 “수탁자”가 기부채납한 재산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제3조 위탁기간 동안 운영권을 부여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수탁재산의 반환) ① 위탁 취소 및 기간 만료 등으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 취소일 또는 기간 만료일까지 위탁 재산을 원상 복구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서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위탁자 여수시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영유아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보육교직원.부모상담. 교육.일시보육 등 One-stop 육아 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제2조 (위탁시설) “갑”은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을”에게 위탁관리하게 한다.

1. 명 칭 :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 위 치 : 여수시 _____
3. 구성원수 : 명 내외

제3조 (위탁업무대상) “갑”이 “을”에게 위탁할 업무는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9조에 따른다.

제4조 (센터의 운영 등)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을” 이 정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위탁기간 및 근무시간)

1.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에 따른다.

제6조 (위탁조건)

1. 센터관리 및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2. “을”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에 대한 임면은 수탁자가 하며,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1. “을”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전문요원 인원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2. “을”은 보조금 및 재산을 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을”이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을”은 관계 법령 및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등)

1. 다음의 경우에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갑” 또는 “을”의 사정에 의거 상호 해약협약이 있었을 경우
 - 나. “을”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다. “을”이 사회적·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에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2.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을”은 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1. “갑”은 “을”의 센터 운영사항을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갑”은 제1호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을”은 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명 칭			
소재지			
위탁기간		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_____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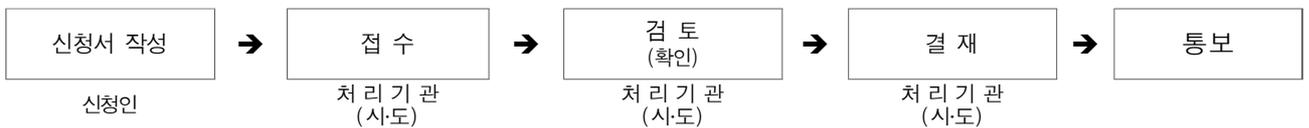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신 설>	제2조(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2조(운영의 위탁)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운영의 위탁) ① ----- ----- ----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조례 제6조에 따라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법 제51조의2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수탁기관의 선정)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여수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립어린이집의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삭 제>

<p><u>제4조(위탁계약) 시장은 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수정 2017. 09. 29></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위탁기간</u> <u>2. 위탁하는 시립어린이집 및 사업내용</u> <u>3.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u> <u>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u> <u>5. 위탁하는 시립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u>6.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u> <u>7.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u> <u>8.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 	<p><u>제4조(수탁자의 선정) 제3조에 따른 수탁자는 상위 법령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제5조(위탁계약) ① 어린이집과 센터의 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p> <p><u>②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날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제5조 (생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보육교직원의 전보)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교직원을 재배치할 수 있다.	<삭제>
<신설>	<p>제7조(보육교직원의 전보)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교직원을 재배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을 재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사용·수익허가 기간과 임차기간 동안에만 그러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부채납된 어린이집 2. 장기 임차를 통해 시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 3. 도서지역(삼산면, 남면, 화정면) 어린이집
제7조 (생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2019년 제5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여수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 월 26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인 

여수시 규칙 제707호

붙임 여수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낚시어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을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하 “낚시어선업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음주 및 정신질환자,”를 “술에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 및”으로, “않는 14세미만 어린이”를 “않은 14세 미만의 사람”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낚시어선업자는 『어선법』 제5조의2 제1항의”를 “낚시어선업자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의”로, “영업중인”을 “영업 중인”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낚시어선업자등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출항할 때부터 입항할 때까지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낚시어선업자등은 여수시 국동·소호항 등 항·포구에서 돌산읍 군내리 송도 인근 해역까지와 남면 횡간리 소횡간도 인근 해역까지는 15노트 이하로 운항하여야 하고,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에 위치한 여수수협 위판장과 송도 사이의 협수로를 지날 때와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예교마을 앞(가두리양식장)에서 화태대교까지는 10노트 이하로 운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항행속력 제한해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항행속력 제한해역, 대상선박 및 제한속력(제6조 관련)

속력 제한해역	대상선박 및 제한속력	비 고
<p>다음 각호의 기점(세계측지계 WGS-84)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p> <p>(1) 북위 34° 44′ 53″ 동경 127° 39′ 28″</p> <p>(2) 북위 34° 43′ 26″ 동경 127° 42′ 40″</p> <p>(3) 북위 34° 36′ 42″ 동경 127° 42′ 27″</p> <p>(4) 북위 34° 36′ 40″ 동경 127° 43′ 11″</p> <p>(5) 북위 34° 35′ 49″ 동경 127° 44′ 15″</p> <p>(6) 북위 34° 35′ 4″ 동경 127° 45′ 54″</p> <p>(7) 북위 34° 34′ 12″ 동경 127° 46′ 29″</p> <p>(8) 북위 34° 34′ 27″ 동경 127° 44′ 59″</p> <p>(9) 북위 34° 33′ 38″ 동경 127° 45′ 30″</p>	<p>대상선박 : 남시어선</p> <p>제한속력</p> <p>1. (4)~(5) 구간 : 10노트이하</p> <p>2. 그 외 구간 : 15노트이하</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안전운항 및 질서유지) ①	· ② (생략)	제6조 (안전운항 및 질서유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u> 은 무인도,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승객의 요구 또는 기상악화 등 필요시 하선한 승객 모두를 신고 입항하여야 한다.	③ <u>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이하 "낙시어선업자등"이라 한다)</u> 는	③ <u>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이하 "낙시어선업자등"이라 한다)</u> 는		
④ <u>낙시어선업자</u> 는 음주 및 정신질환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14세미만 어린이 등 승선에 부적합한 사람을 승선시켜서는 <u>아니된다</u> .	④ ----- 술에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 및 -----	④ ----- 술에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 및 -----		
⑤ <u>낙시어선업자</u> 는 『어선법』 제5조의2 제1항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 또는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u>영업중인</u> 낙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u>아니된다</u> .	⑤ <u>낙시어선업자</u> 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의 -----	⑤ <u>낙시어선업자</u> 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의 -----		
<신설>	⑥ <u>낙시어선업자등</u> 은 낙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출항할 때	⑥ <u>낙시어선업자등</u> 은 낙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출항할 때		

	<p>부터 입항할 때까지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신 설></p>	<p>⑦ <u>낚시어선업자등은 여수시 국동·소호항 등 항·포구에서 돌산읍 군내리 송도 인근 해역까지와 남면 횡간리 소횡간도 인근 해역까지는 15노트 이하로 운항하여야 하고,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에 위치한 여수수협 위판장과 송도 사이의 협수로를 지날 때와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예교마을 앞(가두리양식장)에서 화태대교까지는 10노트 이하로 운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항행속력 제한해역은 별표 2와 같다.</u></p>